

제349회 임시회
2016. 7. 13.(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16년 6월 30일

3.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16.12.26.)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16. 12. 27 ~ ' 19. 12. 26)
- 위 치 : 충청북도 소재
- 수탁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現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센터장 이상수, '13. 12. 27 ~ ' 16. 12. 26)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589백만원(국비 70%, 도비 30%)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 연구 및 조사
 -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

한 기술지원

-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5. 검토의견

○ 법적 근거 및 동의안 내용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간 선정공고를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충실도 등을 심사한 후 선정한 뒤, 3년의 범위 내에서 협약 체결 및 공증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법령에 따른 절차 및 내용으로 타당함.

○ 종합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임.
- 광역치매센터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치매연구 및 조사,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 치매상담 등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를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위·수탁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치매유병률('15)을 보면, 충북의 경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6%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9.8%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군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충청북도 치매관리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이에, 충청도에서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수탁 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권 및 행정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충청북도 치매환자 관리 현황

(단위 : 명)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시군명	치매환자 등록인원
총 계	9,636		
청주시 계	2,315	기타 시군계	7,321
상당구	593	충주시	1,403
서원구	621	제천시	720
흥덕구	505	보은군	834
청원구	596	옥천군	795
		영동군	1,024
		증평군	382
		진천군	733
		괴산군	558
		음성군	594
		단양군	278

※ 충청북도 유병율(10.6%) 대비 추정 환자수 : 23천명